

집중탐구

새해 달라지는 농식품정책



정부가 올 한해 '사람 중심의 농정개혁'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. 사진은 지난 1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'농업인 초청 간담회' 모습.

농식품 부문

◎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

2019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인상돼(2018년 91만원→2019년 97만원)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을 월 2,700원 증가한 4만3,650원으로 인상,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.

◎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

현장요구, 재배면적 등을 고려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(배추, 무, 당근, 호박, 파)을 신규 도입한다.

◎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

영세농가(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)의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. 그동안 모든 농가는 동일하게 농업인안전보험료의 50%를 지원받았으나, 올해부터는 영세농가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 금액의 70%를 지원 받을 수 있다.

◎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

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부생 연료유 2호(중유)를 추가한다. 또한 동력예취기의 연간 사용 시간 증가에 따라 연간 공급량이 52.5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된다.

◎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

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,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. 또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한다.



◎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

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추진 시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'휴경'을 도입한다. 다만 휴경은 실경작자(자료증빙)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, 농지 형상·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휴경 시 임대농지 회수, 농지관리 소홀 등의 단점을 보완해 시행한다. 더불어 품목 간 조정을 통해 조사료(ha당 400만원→ 430만원), 두류(ha당 280만원→ 325만원)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.

◎ 밀 비축제 시행

밀 수매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해 시행한다. 밀 수급안정을 위해 2017년산 밀을 우선 매입(2019년 2월 잠정)하고, 2019년산 신곡 등은 7월부터 매입할 예정이다.

◎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 확대

중소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'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' 가입 시 보험료의 50%를 국가에서 지원한다.

◎ 농지은행사업 활성화

농지매입비축 사업을 확대해 청년농·창업농에 대한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. 또 농지은행 포털을 개편해 전국 단위의 농지종합정보를 제공하고, 온라인에서도 농지은행 사업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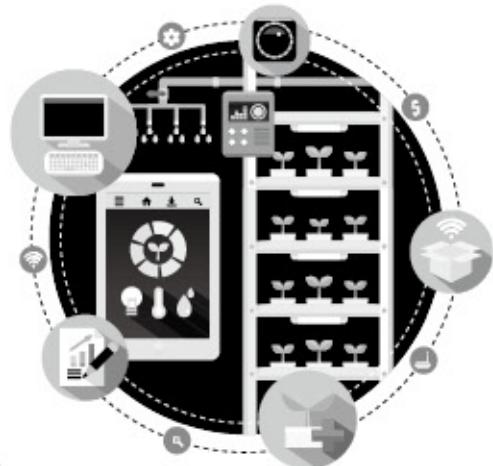
◎ 대통령 직속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

농어업·농어촌의 새로운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된다. 위원회는 농어업·농어촌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농어업인과 민간 전문가,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.



◎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

청년 교육과 농업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청년 교육·창업 징검다리·실증단지 시설이 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.



◎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

귀농 정책 수혜 가능

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 시 귀농인에 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 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된다. 대상은 귀농어귀촌법 개정·시행(2019년 7월)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창업자금, 교육·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.

◎ 전통식품명인, 전수자 활동 지원

'식품명인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'에게 전수활동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식품명인의 명칭을 '대한민국 식품명인'으로 개정해 국가지정 식품명인들의 위상을 강화한다.

◎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

고령친화식품 등 향후 시장을 선도할 미래형 식품 개발을 지원해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뒤쳐지지 않도록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. 특히 국산 농산자원을 활용해 기존 화학 식품첨가물을 대체 할 수 있는 천연물 기반 식품 첨가물 개발을 지원한다.



◎ 저수지 상류, 공장·산업단지 설립 제한 완화

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·산업단지 설립 제한(저수지 만수위로부터 도시·계획 관리 지역은 2km, 그 외 지역은 5km)이 완화된다. 또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·산업단지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 등을 세우고 지방환경청장,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설립 가능하다.

◎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

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한다. 아울러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.

◎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

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농약(원예·가정용 50㎖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)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도록 농약의 범위가 확대된다.

◎ 비료관리 강화

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, 공급 일자,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.

◎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

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사전 교육이 시작된다.

◎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

귀농·귀촌하는 신혼부부·자녀 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(5년~)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4개 시·군, 총 120호 조성한다. 아울러 기존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확충한다.



◎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

청년, 귀촌 희망자 등이 농촌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을 조성·제공한다.

◎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

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·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한다.

◎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

올해 2학기부터 농업농촌에 청년 진입 확대를 위해 졸업 후 농업부분 취·창업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'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'을 지원한다. 농식품계열 대학 등에 3학년 이상 재학생(전문대는 2학년 이상) 500명을 선발,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.



◎ 양곡관리사 도입

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·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.



축산 부문

◎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

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적정 수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.

◎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

'가축전염병 예방법' 개정·시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.



◎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

가축질병, 가축분뇨·악취로 인한 환경오염, 무허가 축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축산 ICT(정보통신기술)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. 사업규모는 개소당 15ha 내외로 3개년에 걸쳐 62억5000만원이 투입된다.

◎ 조류인플루엔자(AI)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



닭·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가 발생할 경우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. 다만 지자체장은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, 지형적 여건과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.

◎ 종계·종오리업, 부화업, 닭·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

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종계·종오리업, 부화업, 닭·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.

◎ 가정용 계란부터 '식용란선별포장업체' 통한 유통 의무화

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가정용 계란부터 '식용란선별포장업체(GP)'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.



◎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확대

오는 12월부터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기존 소·돼지(국내산·수입산)에서 국내산 닭, 오리, 계란까지 확대된다.



◎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

축산농가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 해충 방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신설된다.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및 이들 업체를 통한 해충방제 의무 규정이 신규 적용된다.

◎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

반려동물 간호 관련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'동물간호복지사' 제도가 도입된다.

